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0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박성훈 · 안상훈 · 김은혜
김성원 · 엄태영 · 박수영
이인선 · 임이자 · 김장겸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 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복제·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도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도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본문 중 “기억된 정보”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를”을 “전자정보를”로 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압수·수색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영장집행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와 피고인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압수·수색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 이 경우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

력·반출에 이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같은 항에 규정된 자(검사는 제외한다)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

제2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3조제1항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

제314조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또는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6條(押收) ①・② (생략)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u>기억된 정보</u>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u>정보</u>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第114條(영장의 방식)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	第106條(押收)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정보저장매체등</u> <u>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u> <u>보”라 한다)</u>-----. ----- ----- ----- ----- -----. ④ ----- <u>전자정</u> <u>보를</u> ----- ----- ----- -----. 第114條(영장의 방식) ①----- ----- ----- -----. -----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생략)

第121條(令狀執行과 當事者の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압수・수색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 저장매체등

나.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영장집행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와 피고인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압수・수색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 이 경우 전자정보의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탐색 · 복제 · 출력 · 반출에 이
르는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같은
항에 규정된 자(검사는 제외하
다)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
명(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가 이루
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 참여권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
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
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
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
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
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레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
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
우
2.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
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

----- 정보저장매체등-----

----- 보전대상전자정보-----

-- 보전대상전자정보-----

1. -----

2. -----

3. -----

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
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
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
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
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보전대상전자정보

--.

⑤ -----

----- 보전대상전자정보 -----

-----.

⑥ ----- 보전대상전자정보 ---

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신설>

-----.

-----.

⑦ -----

----- 보전대상전자정보 -----

-----.

⑧ -----

----- 보전대상전자정보 -----

-----.

⑨ (현행과 같음)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第313條(陳述書等) ①-----

정보저장매체등-----

[illegible]

立의 眞正함이 證明되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 진 때에 限하여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 정보저장매체
등-----

-----.

-----.